발간등록번호 31-9735039-001355-14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36호 2015. 10. 7.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현장조사보고서 Vol. 36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하혜영(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
권용훈(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

2015. 10. 7.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내 용
주제 선정	2015. 1. 3.
초고 작성기간	2015. 5. 1. ~ 2015. 8. 20.
초안 검토	이상팔 안전행정팀장, 안전행정팀 조사관
실무위원회 검토	2015년 9월 3일(목) 16시 – 실무위원: 문병철 정치행정조사실장 김영일 팀장, 오명호 팀장, 박종희 팀장
외부전문가 자문	1. 전문가 : 김동성 센터장(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2. 요청일 : 2015. 8. 30. 3. 답변일 : 2015. 9. 3.
간행물 심의위원회 의결	2015년 9월 17일(목) 11시 – 위원장 :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 위 원 : 문병철 정치행정조사실장 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 박출해 기획관리관 임동춘 경제산업조사실장직무대리

요 약

이 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반환공여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하며,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에서 반환이 완료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 연구를 위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이 있는 9개 지자체를 방문해 관련 공무원과의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해서 재배치하는 사업이며, 평택기지와 같이 새로 건설되는 미군기지가 있는 반면 기지가 옮겨지면서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근거해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17)'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그동안 운영실태를 보면, 2014년까지 계획된 총 42조 8,880억원 중에서 8조 3,731억원이 집행되어 추진율은 19.5%였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진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도로건설사업'의 추진실적이 65%로 가장 높았고, '반환공여지 지원사업'(15.3%)과 '민자사업(12.1%)은 낮았다.

미군 반환공여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이다. 발전종합계획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수립되었고,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와 미군 및 중앙정부 간의 소통 채널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미군기지의 반환연기 등 각종 정책변경 사항이 지자체에 적시에 전달되지 않아서, 지자체가 반환공여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되고 있었다.

둘째,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의 문제점이다.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토지매입비 지원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금도 법령에서 정한 최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지원되지 않아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 그리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최대 8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50%에 머물고 있었다.

셋째, 민자사업 유치제도의 문제점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의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조세 및 세제혜택의 범위와 비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된 타법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서 실제 각종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더불어 실효성이 있는 민자유치 유인제도의 부재도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다음은 미군 반환공여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의 개선과제이다. 첫째,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평택미군기지의 건설비용은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매입대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사업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미군 반환 및 공여구역이 있는 지자체와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추진된 제1차 발전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2017년에 제2차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지연되면서 반환공여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한편, 지방정부는 관련 사업을 자치단체장의 교체여부와 관계없이 연속성을 유지해서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 미군 반환공여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과 관련된 사업은 추진기간이 수년이 걸리는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의 추진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제2차 발전종합계획의 경우 사업별 타당성 심사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2차 발전종합계획의 경우 지자체의 개발수요와 잠재력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계획

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참여한 범정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반환공여구역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협의체를 설립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이다.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대상과 지원비의 확대가 필요하다. 도로·하천·공원 조성시 국유지 매입경비의 지원을 최소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유지 매입경비의 지원대상을 공공시설(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로 확대하며, 사업비의 경우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편,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최소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넷째, 민자사업의 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법령상으로 민자사업 유치시 세금 감면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와 연관된 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도 제3섹터 방식의 도입 등 다양화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다만, 자칫 민자유치 정책으로 인해 부실사업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인책과 더불어 최소한의 규제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사업 중에서 용산기지이전 및 국가공원조성사업과 평택기지 건설사업의 경우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그 외 지역의 미군 반환공여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안보 차원에서 6.25 이후 특별한 보상없이 미군의 주둔을 감내한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평택 등 새로운 미군기지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건설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환됐거나 반환될 기지의 주변지역이 지역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개발되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겠다.

차 례

□ 요약

Ⅰ. 현장조사 개요 / 1

1. 조사배경과 목적 ····· 1

2. 조사일정과 대상 ····· 2

3. 조사방법과 내용 ····· 5

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 7

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현황 ····· 7

가. 사업의 개요 ····· 7

나. 용산공원조성 사업의 추진현황 ····· 8

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추진현황 ····· 9

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 ····· 11

가.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 등에 대한 정의 ····· 11

나. 지원제도의 연혁 ····· 11

다.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 12

3.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현황 ····· 14

가.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현황 ····· 14

나.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정 현황 ····· 15

다.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재정여건 ····· 17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추진현황 ····· 18

가. 법적 근거 ····· 18
나.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유형 및 사업별 예산현황 ····· 18
다. 발전종합계획의 추진현황 ····· 21

Ⅲ. 현장조사 결과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 25

1. 개요 ····· 25
2. 현장조사의 결과 ····· 26
가. 경기도 동두천시 ····· 26
나. 경기도 포천시 ····· 30
다. 경기도 연천군 ····· 33
라. 경기도 파주시 ····· 36
마. 경기도 의정부시 ····· 39
바. 전라북도 군산시 ····· 43
사. 강원도 원주시 ····· 45
아. 대구광역시 남구 ····· 47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50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 53
가.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 ····· 53
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의 문제점 ····· 56
다. 민자사업 유치제도의 문제점 ····· 59

Ⅳ. 향후 개선과제 / 62

1. 기본방향 ····· 62
가. 정책의 추진방향 ····· 62

나. 정부의 책임과 의무 ····· 63
2.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개선 ····· 66
가. 발전종합계획의 타당성 심사절차 강화 ····· 66
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67
다. 범정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마련 ····· 68
3.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개선 ····· 70
가. 반환공여구역의 정부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 70
나. 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 ····· 72
4. 민자사업의 유치 활성화 방안 ····· 72
가. 법령상 감면대상과 범위의 구체화 필요 ····· 72
나. 민자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 75

Ⅴ. 결론 / 78

□ 참고문헌

표 차 례

[표 1] 현장조사를 위해 선정된 지역 및 일정 ····· 3
[표 2] 경기도 지역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현황 ····· 3
[표 3] 경기도외 방문지역의 주요 특징 ····· 4
[표 4] 현장조사시 주요 조사항목 ····· 6
[표 5]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근거 법률 ····· 8
[표 6] 평택미군기지 건설관련 지역주민 지원사업 현황 ····· 10
[표 7] 반환공여구역 현황(2015년도 7월 기준) ····· 15
[표 8] 공여구역 주변지역 현황 ····· 16
[표 9]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현황 ····· 16
[표 10]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재정자립도 현황(2015년도) ····· 17
[표 11]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유형 ····· 19
[표 12]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유형별 사업내역 ····· 20
[표 13]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유형별 추진실적 ····· 21
[표 14]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유형별·재원별 추진실적 ····· 22
[표 15] 현장조사 방문지역의 주요 특징 ····· 25
[표 16]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반환) 구역 현황 ····· 27
[표 17]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 28
[표 18] 포천시 주한미군 공여(반환) 구역 현황 ····· 30
[표 19] 포천시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 31
[표 20] 포천시 민자사업 추진현황 ····· 32
[표 21] 연천군 주한미군 공여(반환) 구역 현황 ····· 33
[표 22] 연천군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 34
[표 23] 파주시 주한미군 반환기지 현황과 활용계획 ····· 36

[표 24] 파주시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 37
[표 25] 파주시 반환기지별 사업 추진현황 ····· 38
[표 26]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기지 현황과 활용계획 ····· 39
[표 27] 의정부시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 40
[표 28] 의정부시 반환(예정)기지별 사업 현황 ····· 40
[표 29]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광역행정타운 건설계획 ····· 41
[표 30] 군산시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 43
[표 31] 강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현황 ····· 45
[표 32] 원주시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 46
[표 33] 원주시 발전종합계획 반환공여지 사업내역 ····· 47
[표 34] 대구광역시 주한미군 공여(반환)구역 현황 ····· 48
[표 35] 대구광역시 남구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 49
[표 36] 캠프워커 반환공여구역 사업추진 현황 ····· 49
[표 37]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구입 및 사업비 지원 관련 입법안 ····· 71
[표 38]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민간투자시 세금감면 관련 입법안 ····· 74

그 림 차 례

[그림 1] 동두천 수변공원 전경(전, 동두천 캠프 님블) ····· 26
[그림 2]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및 주변지역 ····· 27
[그림 3] 파주 DMZ 체험장(전, 캠프 그리브스) ····· 36
[그림 4] 의정부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전, 캠프 에세이욘) ····· 41
[그림 5] 부산시민공원 전경 ····· 51
[그림 6] 시민공원내 공원역사관(캠프 하야리야 당시 장교클럽 리모델링) ··· 51

Ⅰ. 현장조사 개요

1. 조사배경과 목적

□ 한국과 미국 양국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를 재배치하고 있음

○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부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 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lan) 사업과 한강 이북 동두천과 의정부에 위치한 미 2사단 부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사업임

□ 이에 따라 지난 60년 이상 사용되던 주한미군기지의 일부가 단계적으로 반환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군기지 반환구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이 요구됨

○ 주한미군이 주둔하던 지역은 미군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형성됐기 때문에 향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많은 미군기지가 공여되었던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우 기지가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도시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지원하고자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함

○ 이 법에 따라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44개 시·군·구에 152개 읍·면·동이 지정되었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는 30개 시·군·구에 178개 읍·면·동이 지정되었음

□ 2008년 1월에 정부는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17)'을 확정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은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 등이 참여한 대규모 사업계획으로 2017년에 완료될 예정임

□ 이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연구의 범위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과 더불어 현재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함

○ 이 연구를 위해서 미군 반환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이 있는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그동안 추진된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과 더불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지역민원 등을 조사함

2. 조사일정과 대상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정부의 지원실태를 조사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2015년 1월 말부터 4월초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함

□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등이 있는 9개 지자체를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과의 면담과 더불어 주요 미군기지와 그 주변지역을 살펴봄

○ 해당 지역은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파주시, 의정부시, 전라북도 군산시, 강원도 원주시, 대구광역시 남구청, 부산광역시임

[표 1] 현장조사를 위해 선정된 지역 및 일정

지 역		일 자	방 문 장 소
경기도	동두천시	2015.2.13.	동두천시청, 캠프 케이시 및 주변지역, 수변공원(반환공여구역)
	포천시	2015.2.25.	포천시청, 반환공여구역 일대
	연천군	2015.2.25.	연천군청, 반환공여구역 일대
	파주시	2015.3.20.	파주시청, 반환공여구역 일대
	의정부시	2015.3.24.	의정부시청, 캠프 레드크라우드 및 주변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2015.1.21	군산시의회, 에어베이스 주변지역
강원도	원주시	2015.4.1.	원주시청, 반환공여구역 일대
대구광역시	남구	2015.4.2.	남구청, 캠프 워커 주변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5.4.3.	부산시청, 부산시민공원

□ 현장방문을 위해 선정된 지역의 특징과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 우선,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경기도 북부지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했으며, 경기도외 지역은 권역별로 선정했음

[표 2] 경기도 지역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현황

(단위: 개소, ㎡, %)

소재지	기지수	공여구역 총계	반환구역	지속공여
전국 계	93개소	242,070,306 (100)	179,543,560 (100)	62,526,746 (100)
경기도	51개소	210,611,366 (87.0)	172,523,180 (96.1)	38,088,186 (60.9)
경기도외 지역	42개소	31,458,940 (13.0)	7,020,380 (3.9)	24,438,560 (39.1)

자료: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실, 내부자료(2015).

○ 경기도내 미군 공여구역은 전국의 87.0%이고, 반환공여구역은 전국의 96.1%를 차지함.[1] 이에 따라 경기도 북부지역의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파주시, 의정부시를 선정함

□ 경기도외 지역의 경우 권역별로 주요 시·군을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은 미군기지의 반환여부와 기지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선정함

○ 전라북도 군산시는 비행장인 에어베이스가 있는데, 이 훈련장은 미군에 계속 공여할 예정임

○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주한미군 캠프들의 반환이 이미 결정되었고 현재 반환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

○ 대구 남구는 도심지 한가운데 미군 캠프가 위치해 있으며, 반환이 결정된 곳과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캠프가 있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캠프 하야리야가 반환되어 2014년 5월 1일 부산시 민공원으로 개장함

[표 3] 경기도외 방문지역의 주요 특징

소재지	주요 기지명	공여지 유형	선정 사유
전북 군산	군산 폴터미널	지속공여	비행장 특징 및 지속공여지 특징
	군산에어베이스	지속공여	
강원 원주	캠프 롱	반환예정	캠프 반환예정지 특징
	캠프 이글	반환예정	
	원주 에어	반환예정	
대구 남구	캠프 헨리	지속공여	캠프 지속공여 및 반환예정
	캠프 워커	반환예정	
부산 부산진구	캠프 하야리야	반환완료	반환 후 공원조성 사례 조사

1)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선과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2015.

□ 한편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과 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간담회를 2회 실시함

○ 제1차 전문가간담회(2015.1.23.)는 현장조사 실시 전에 국내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현장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설정하는 데 참조하고자 실시함

○ 제2차 전문가간담회(2015.9.1.)는 연구보고서 초안 작성 후에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함

[제1차 전문가간담회] ◦ 주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선과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 발표: 함경수 팀장(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실 공여구역팀장) ◦ 토론: 김동성 센터장(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박한상 박사(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실)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 일시: 2015.1.23.(금), 10:00∼12:00
[제2차 전문가간담회] ◦ 주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실태와 과제 ◦ 발표: 하혜영·권용훈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 토론: 사영배 팀장, 심창우 주무관(행정자치부 지역개발과)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 일시: 2015.9.1.(화), 16:00∼18:00

3. 조사방법과 내용

□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실태를 조사하고자, 관련 지자체를 방문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이와 더불어 주요 미군 캠프와 그 주변지역, 그리고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함

□ [표 4]는 지방자치단체의 미군 공여 및 반환공여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의 인터뷰 질문 및 자료 조사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지역의 기본현황(인구, 면적, 재정자립도), ② 미군 공여 및 반환공여구역의 현황, ③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실태, ④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및 향후 개선과제 등임

[표 4] 현장조사시 주요 조사항목

구 분	조사 항목
기본 현황	◦ 해당 지자체 인구, 면적, 재정자립도 등
주한미군 공여 및 반환구역 현황	◦ 주둔 주한미군 시설 현황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현황
공여 및 반환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실태	◦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현황 ◦ 반환(예정) 사업추진 실태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및 개선과제	◦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 ◦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지역민원 사항 ◦ 향후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

□ 그리고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관련 부처(행정자치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를 통해 관련 공여구역지원사업,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용산공원추진사업 등의 현황자료를 수집함

□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관련 학술논문, 국회 관련 위원회의 법안검토보고서, 그리고 각종 연구 및 정책보고서 등 문헌연구도 함께 실시함

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현황

가. 사업의 개요

□ 1990년대 후반부터 국외적으로는 미군 부대의 효율적 배치 계획과 국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미군기지 재배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됨[2)]

□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부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 이전계획(YRP) 사업임. 용산기지의 공원조성을 위해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이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 설치되어 있음

○ 둘째, 한강 이북 동두천과 의정부 등에 위치한 미 2사단 부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들을 평택 등 5개 기존기지(평택, 군산, 포항, 김천 등) 주변으로 통합 이전함

- 특히 평택기지 건설과 관련해 2004년 12월 31일에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있음

○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2) 한인영·오은주,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2014, p.474.

등을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이 있으며, 이를 위해 2006년 3월 3일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함

- 이 사업의 주관부처는 행정자치부이며, 법률 제정 당시에는 '공여구역 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설치규정이 있었으나, 2009년 12월 일부개정시 동 규정이 삭제되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별도 협의체가 없음

[표 5]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근거 법률

구분	「용산공원조성특별법」	「평택지원특별법」 1)	「주한미군공여법」 2)
제정	2007.7.13	2004.12.31	2006.3.3.
주관	국토교통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주요 내용	용산기지 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 등	평택기지 건설 및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등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 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사업 및 주민지원 등

주1: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주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나. 용산공원조성 사업의 추진현황

□ 용산미군기지의 이전부지에 조성될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의 정비를 위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토교통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가 추진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공원은 2016년까지 사업설계를 마치고 3단계의 추진단계를 거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3) 현재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설계가 추진 중임

□ 용산공원의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공원조성비용은 약 1조 2천억원으로 추정됨

3)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2014. 12.

○ 공사비 8,840억원(철거비 포함), 토양정화비 1,030억원, 용역비 430억원, 기타 1,700억원 등으로 구성됨

□ 이러한 비용의 부담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나,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음(「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42조제1항). 향후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와의 협의를 통해 분담영역을 결정할 예정임

□ 또한 정부의 재정투입 뿐만 아니라 BTL, BTO, BOO 등 다양한 민간투자방식[4]과 민관합동추진 방식도 고려하고 있음

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추진현황

□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가 추진함

□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2015년 말까지 88%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5년 3월 기준으로 79.3%까지 실시된 것으로 조사됨

□ 주민지원 사업 현황의 경우, 대상지역은 평택시와 오산시의 미군기지 주변 3㎞이내 165개 마을이며, 사업범위는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13개 분야, 총 1조 1,402억원이 계획됨. 2015년 3월 기준 8,456억원이 집행되어 추진율은 74%임

---

4) BTL(Build Transfer Lease)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BTO(Build Transfer Operate)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BOO(Build Own Operate)란 민간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운영권 포함)을 영원히 인정하는 방식임

[표 6] 평택미군기지 건설관련 지역주민 지원사업 현황

사업	규모	예산	사업	규모	예산
소공원	77개소	882억원	소하천정비	2개소	21억원
마을회관 개축	73개소	273억원	마을하수도설치	17개소	910억원
보안등 설치	469개소	7억원	농어촌도로개설	14개소	668억원
체육시설 설치	5개소	418억원	방음시설설치	1식	1,800억원
주민숙원사업	531개소	1,555억원	도시계획시설정비	58개소	2,026억원
기지주변 용수공급	50개마을	195억원	주변도로 확·포장 사업	15.75㎞	1,723억원
마을진입도로	52개소	624억원	생활안정자금지원 (별도)	436세대	300억원

자료: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내부자료(2015).

□ 2010년 12월 기준으로 평택기지 이전사업의 총 예상 사업비용은 8.86조원(건설비 + 사업지원비 3.83조)이며, 이러한 비용조달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 특별회계의 세입은 반환기지매각대금,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금)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는 반환기지의 매각지연으로 공자금 예수금,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 2015년 3월 기준, 반환기지매각 대상 47개소 중에서 7개소가 완료되어 1.19조원(총 예상 세입 4.76조원)이 국방부 세입으로 들어옴

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

가.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 등에 대한 정의

□ 미군 공여지란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진 땅을 말함

○ 법률적 정의를 보면,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함(법 제2조제1항)

○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이의 연접한 읍·면·동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역을 말함(법 제2조제2항)

□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에서 반환이 완료된 지역을 의미하며,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역과 인접지역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고 함

○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함(법 제2조제3항)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이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함(법 제2조제4항)

나. 지원제도의 연혁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제17대 국회에서 의

원발의로 제출된 3건[5]의 법안의 내용을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2005.12.7.)으로 제출해 제정된 것임

□ 이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012년 2월 22일 일부개정 법률이 있음

○ 당시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인·허가 의제 기간을 단축함

□ 이 법에 근거해서 정부는 2007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1월에 확정했는데, 사업기간은 10년간(2008년～2017년)임. 그동안 지자체의 건의 등에 따라 총 8차에 걸쳐서 계획은 부분 변경되었음[6]

다.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며,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제정됨(법 제1조)

---

5) 문희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2004.11.23.), 이재창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기지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04.11.24.), 김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2004.12.2.)이 있음

6) 1차 변경('09.2월), 2차('09.4월), 3차('10.8월), 4차('11.7월), 5차('12.10월), 6차('13.8월), 7차('14.7월), 8차('15.1월)

□ 현행 법률(제12844호, 2014.11.19.)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정부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시·도지사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법 제7조)

□ 둘째,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활용지원 등에 관한 내용임.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도록 하고(법 제12조제1항), 반환공여구역에 대하여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12조제3항)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야 함(법 제12조제7항)

○ 그리고 지자체의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에 드는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으로 편입돼야 하는 토지와 관할 지자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는 매입 소요비용의 60%이상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7)]

□ 셋째,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규제 완화임.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신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설의 특례(법 제15조)의 경우에는「수도권정비계획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음

○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등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반환공여 및 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특례(법 제18조)는 「사립학교법」등에도 불구하고, 반환공여 및 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교육재정지원의 특례(법 제19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 및 주변지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음

□ 그 외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개발(법 제20조, 제21), 고용안전사업 지원(법 제23조), 사회기반시설 지원(법 제24조),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법 제26조) 등이 있음

3.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현황

가.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현황

□ 전국에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은 129개소이며, 이중에서 미군에게 계속 공여하는 지속공여구역은 49개소, 반환대상 기지는 80개소임. 반환대상 기지 중에서 이미 반환된 곳은 54개소이고, 반환예정이거나 협상 중인 곳이 26개소임

□ 반환공여구역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국군부대로 사용되거나 원소유자로 반환될 수 있으며, 지자체나 민간에 매각될 수 있음

○ 군부대사용 및 원소유자 반환은 33개소이며, 지자체 매각은 29개소, 민간 매각은 18개소임

○ 특히 지자체 매각의 경우 현재까지 17개소가 반환이 완료되었으며, 3개소가 반환협상이 진행 중이고, 9개소가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임

[표 7] 반환공여구역 현황(2015년도 7월 기준)

<table>
<tr><th colspan="5">구 분</th><th>개소</th></tr>
<tr><td colspan="5">총 계</td><td>129</td></tr>
<tr><td rowspan="17">전체
공여구역</td><td colspan="4">지속공여구역</td><td>49</td></tr>
<tr><td rowspan="16">반환공여
구역</td><td colspan="3">반환공여구역 합 계</td><td>80</td></tr>
<tr><td colspan="2" rowspan="4">군부대사용,
원소유자 반환</td><td>소 계</td><td>33</td></tr>
<tr><td>기반환</td><td>25</td></tr>
<tr><td>반환협상 진행중</td><td>1</td></tr>
<tr><td>반환예정</td><td>7</td></tr>
<tr><td rowspan="8">매각</td><td rowspan="4">지자체</td><td>소 계</td><td>29</td></tr>
<tr><td>기반환</td><td>17</td></tr>
<tr><td>반환협상 진행중</td><td>3</td></tr>
<tr><td>반환예정</td><td>9</td></tr>
<tr><td rowspan="4">민간</td><td>소 계</td><td>18</td></tr>
<tr><td>기반환</td><td>12</td></tr>
<tr><td>반환협상 진행중</td><td>1</td></tr>
<tr><td>반환예정</td><td>5</td></tr>
</table>

주: 반환예정상태에서 SOFA 반환협상이 진행되고, 반환협상을 거친 뒤 반환이 완료됨
자료: 국방부 내부자료(2015).

나.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정 현황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전국 44개 시·군·구에 152개 읍·면·동(17읍·48면·87동)이 해당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표 8] 공여구역 주변지역 현황

구분	시·군·구 (총 44개)
부산(5)	동구(1동), 남구(1동), 해운대구(1동), 강서구(2동)
대구(10)	중구(1동), 동구(8동), 달성군(1면)
인천(1)	강화군(1면)
광주(3)	광산구(3동)
대전(3)	대덕구(2동), 동구(1동)
경기(55)	수원시(9동), 성남시(7동), 과천시(1동), 평택시(2면・4동), 용인시(1면・9동), 화성시(1읍・3면・3동), 포천시(1면), 의왕시(2동), 오산시(1동), 양평군(1읍・5면), 연천군(2면), 가평군(1읍・2면)
강원(4)	춘천시(2면), 화천군(1면), 철원군(1읍)
충북(2)	청주시(1동 1읍)
충남(7)	천안시(2읍・3면・1동), 아산시(1면)
전북(8)	군산시(1읍・1면・6동)
경북(37)	포항시(1읍・3면・2동), 경주시(1면・1동), 구미시(2읍・6동), 김천시(1읍・3면), 문경시(1면), 예천군(1읍・5면), 칠곡군(2읍・4면), 성주군(1면), 울릉군(1읍・2면)
경남(17)	양산시(1읍・2면・2동), 창원시(12동)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현황은 전국 30개 시·군·구에 178개 읍·면·동(20읍·62면·96동)이 해당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표 9]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현황

구분	시·군·구(총 30개)
부산(6)	부산진구(6동)
대구(11)	남구(11동)
인천(6)	부평구(6동)
경기(102)	성남시(1동), 고양시(3동), 의정부시(15동), 남양주시(2읍・2면), 평택시(2읍・4면・5동), 화성시(1읍・2면・1동), 파주시(5읍・9면・2동), 포천시(1읍・9면・2동), 광주시(2면), 하남시(7동), 양주시(1읍・4면・6동), 동두천시(7동), 연천군(2읍・6면), 양평군(1면)
강원(27)	춘천시(4동), 원주시(3면・5동), 횡성군(1읍・7면), 영월군(1읍・2면), 태백시(1동), 홍천군(2면), 철원군(1읍)
경북(17)	포항시(1읍14동), 봉화군(2면)
경남(6)	사천시(1읍・3면), 진주시(2면)
제주(3)	제주시(1읍, 2면)

다.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재정여건

□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의 2015년 평균 재정자립도는 31.7%임. 이는 전국 자치단체(광역+기초) 평균 45.1%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 24.7%보다 7%p가 높음

□ 그러나 지역별 편차가 큰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경북 봉화군은 5.9%이고, 반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로 59.0%로 나타남

[표 10]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재정자립도 현황(2015년도)

(단위: %)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미군 공여구역 평균	31.7	경기 가평군	17.9	강원 철원군	8.1
		경기 양평군	20.2	강원 화천군	8.3
부산 동구	14.6	경기 평택시	39.2	충북(신)청주시	27.1
부산 부산진구	21.9	경기 동두천시	15.6	충남 천안시	40.5
부산 남구	22.7	경기 고양시	44.5	충남 아산시	36.1
부산 해운대구	27.4	경기 과천시	44.1	전북 군산시	22.3
부산 강서구	44.5	경기 남양주시	36.0	경북 포항시	33.6
대구 중구	25.3	경기 오산시	34.4	경북 경주시	19.7
대구 동구	16.5	경기 의왕시	36.5	경북 김천시	12.3
대구 남구	9.8	경기 하남시	40.3	경북구미시	37.5
대구 달성군	26.6	경기 용인시	54.8	경북 문경시	13.7
인천 부평구	19.0	경기 파주시	39.6	경북 성주군	10.3
인천 강화군	11.1	경기 수원시	51.8	경북 칠곡군	20.5
광주 광산구	19.8	경기 성남시	56.1	경북 예천군	6.4
대전 동구	12.8	경기 의정부시	28.2	경북 봉화군	5.9
대전 대덕구	17.2	강원 춘천시	22.3	경북 울릉군	9.6
경기 화성시	59.0	강원 원주시	23.0	경남 창원시	40.0
경기 광주시	48.6	강원 태백시	18.2	경남 진주시	19.7
경기 양주시	30.6	강원 홍천군	12.1	경남 사천시	13.9
경기 포천시	24.6	강원 횡성군	11.4	경남 양산시	35.6
경기 연천군	20.7	강원 영월군	14.7	제주 본청	29.8

자료 : 행정자치부 재정고(http://lofin.mogaha.go.kr)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추진현황

가. 법적 근거

□ 발전종합계획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수립 및 수정하고 있음. 사업의 대상지역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세 지역이 대상임

□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절차는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함(법 제7조 제1항)

○ 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함(시행령 제8조제3항)

나.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유형 및 사업별 예산현황

□ 발전종합계획 사업은 총 5가지 사업유형(반환공여지 지원사업, 주변지역 도로사업,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비 재원은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으로 구성됨

□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유형을 보면,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의 경우 반환공여지 부지 매입, 반환공여지내 부지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함

○ 주변지역 도로사업은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추진되는 신규 도로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소관의 사업을 말함

○ 타부처 사업이란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자체를 지원하는 행정자치부외 타부처 사업을 말하며,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타부처에서 진행되던 국고보조사업이 이관되었음

○ 지자체 자체사업은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자체가 시행하는 자체사업을 의미함

○ 민간투자사업은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을 말하며, 분야는 산업단지 조성, 리조트 건설 사업, 발전소 건설 등으로 다양함

[표 11]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설명	주요사업
반환공여지 지원사업	반환받은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반환 부지 매입비, 부지 개발사업, 구역내 도로사업
주변지역 도로사업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신규 도로사업(행정자치부 소관)	도로확장, 도로 신설 사업
타부처 사업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지자체를 지원하는 행정자치부 외 타부처 사업	복지회관 건설, 소하천 정비사업, 도서관 건립
지자체 자체사업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공원조성, 산업단지 조성
민간투자 사업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투자사업	산업단지 조성, 대학유치, 리조트 건설

□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 설립 당시 총 327개 사업, 12조 344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사업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조 9,981억원, 지방비 2조 7,693억원, 민간자본 7조 2,669억원으로 편성됨

○ 최초 발전종합계획에는 반환공여지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09년 1차 수정계획에서 반영하여 현재와 같은 발전종합계획의 사업 유형을 갖추었고, 이 계획은 현재까지 8차에 걸친 수정이 있었음

□ 2015년 1월 기준으로 최종 수정된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은 총 사업건수가 522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2조 8,880억원 규모로 편성됨

[표 12]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유형별 사업내역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건수	사업비 재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합 계	522	428,880	41,175	59,124	328,581
반환공여지 지원사업	92	81,298	13,442	17,411	50,445
주변지역 도로사업	134	22,103	9,041	13,062	0
타부처 사업	235	41,977	18,566	13,704	9,708
지자체 자체사업	30	17,434	126	12,271	5,037
민간투자사업	31	266,068	0	2,677	263,392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15)

□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유형별 사업규모를 보면, 사업 건수로는 타부처사업 235건, 주변지역도로사업 134건, 반환공여지 지원사업 92건, 민간투자사업 31건, 지자체 자체사업 30건으로 편성됨

○ 사업비 규모로는 민자사업이 26조 6,068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반환공여지 지원사업(8조 1,298억원), 타부처 사업(4조 1,977억원), 주변지역 도로사업(2조 2,103억원), 지자체 자체사업(1조 7,434억원) 순임

□ 사업비 재원별로는 총 42조 8,880억원 중 국비 4조 1,175억원, 지방비 5조 9,124억원, 민간자본이 32조 8,581억원으로 편성되어 민간자본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

○ 국비는 4조 1,175억원 중 타부처 사업(1조 8,566억원)과 반환공여지 지원사업(1조 3,442억원)에 대부분 편성되었음

○ 지방비는 5조 9,124억원으로 민자사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 민간자본은 32조 8,581억원 중에서 민자사업(26조 3,392억원)과 반환공여지 지원사업(5조 445억원)에 주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음

다. 발전종합계획의 추진현황

□ 발전종합계획의 지원사업은 2014년까지 총 42조 8,880억원 중에서 8조 3,731억원이 추진되어 전체 사업의 총 추진율은 19.5%임

□ [표 13]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유형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주변지역 도로사업이 가장 높으며(69%), 행자부외 타부처 사업(43.9%), 지자체 자체사업(30.7%), 반환공여지 지원사업(15.5%), 민자사업(12.1%) 순으로 추진율을 보임. 이를 통해서 보면, 민자사업과 반환공여지 지원사업의 추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음

[표 13]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유형별 추진실적

(단위: 억원, %)

구분	계	반환공여지 지원사업	주변지역 도로사업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자사업
계획	428,880	81,298	22,103	41,977	17,434	266,068
추진 (%)	83,731 (19.5)	12,624 (15.5)	15,242 (69.0)	18,424 (43.9)	5,344 (30.7)	32,098 (12.1)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15)

□ 구체적으로 사업유형에 따른 사업비 재원별 추진실적은 [표 14]와 같음

○ 반환공여지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추진율은 각각 41.1%, 32.0%인데 비해, 민간자본의 경우 3.0%로 저조한 수준임

○ 주변지역 도로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추진율은 각각 70.8%, 67.7%로 양호한 수준임

○ 타부처 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추진율이 각각 41.3%, 54.4%이고, 민간자본이 34.1%로써 지방비의 추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지자체 자체사업의 경우 국비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547.3%가 추진되었고, 지방비 24.7%, 민간자본이 32.3%가 추진됨

○ 민자사업의 경우 국비는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926억원이 추진되었고, 지방비가 17.3%, 민간자본이 11.7%가 추진됨

[표 14]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유형별 · 재원별 추진실적

(단위: 억원, %)

구분		사업비 재원 유형			
		계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합계	계획	428,880	41,175	59,124	328,581
	추진	83,731	21,211	25,363	37,158
	(%)	(19.5)	(51.5)	(42.9)	(11.3)
반환 공여지 지원사업	계획	81,289	13,442	17,411	50,445
	추진	12,624	5,532	5,577	1,515
	(%)	(15.5)	(41.1)	(32.0)	(3.0)
주변지역 도로사업	계획	22,103	9,041	13,062	0
	추진	15,242	6,400	8,842	0
	(%)	(69.0)	(70.8)	(67.7)	-
타부처 사업	계획	41,977	18,565	13,704	9,708
	추진	18,424	7,664	7,455	3,306
	(%)	(42.8)	(41.3)	(54.4)	(34.1)

구분		사업비 재원 유형			
		계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지자체 자체사업	계획	17,434	126	12,271	5,037
	추진	5,344	690	3,027	1,627
	(%)	(30.7)	(547.3)	(24.7)	(32.3)
민자사업	계획	266,068	0	2,677	263,392
	추진	32,098	926	462	30,711
	(%)	(12.1)	-	(17.3)	(11.7)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재구성(2015)

□ 이상의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본 결과, 민간자본의 추진율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유형중 반환공여지 지원사업(3.0%)과 민자사업(11.7%)의 추진실적 저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반환공여지 지원사업의 저조한 추진실적은 미군기지의 반환지연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민간투자 유치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활용할 계획인 29개 기지 중에서 12개 기지가 미반환 상태이고, 이 중 9개 기지에 대해서는 반환협상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민자사업의 경우 발전종합계획 사업유형중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추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 원인으로 경기상황의 악화, 사업시행자의 경영난, 관련 법률상 사업시행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

□ 한편 전반적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추진실적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민자사업 분야에서는 국비와 지방비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수준임

○ 주변지역도로사업과 반환공여지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양호한 추진율을 보임. 반환공여지 지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 추진율은

저조한데, 국비와 지방비는 비교적 양호함. 이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반환공여지 내 하천·공원조성사업이 적극 추진됐기 때문임

○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어려움 등에 따라 사업 자체가 중단·취소되면서 국비와 지방비 또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Ⅲ. 현장조사 결과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개요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방문한 지역은 9개 지역임

○ 미군 공여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파주시, 의정부시 등 5개 지역을 방문함

○ 경기도외 지역으로는 광역별로 미군기지 유형, 반환 및 공여 유형 등을 고려해서 전라북도 군산시, 강원도 원주시, 대구광역시 남구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 4개 지역을 선정해 방문함

[표 15] 현장조사 방문지역의 주요 특징

방문지역		주요 기지유형	기지수	공여(반환)
경기도	동두천시	도심기지	6개소	반환, 반환예정
	포천시	훈련장	4개소	반환, 지속공여
	연천군	훈련장	3개소	대부분 지속공여
	파주시	도심기지	13개소	대부분 반환, 일부 지속공여
	의정부시	도심기지	9개소	반환, 반환예정
전라북도	군산시	비행장	2개소	지속공여
강원도	원주시	도심기지	3개소	반환예정
대구광역시	남구	도심기지, 헬기장	3개소	지속공여, 반환예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심기지	1개소	반환

2. 현장조사의 결과

가. 경기도 동두천시

(1)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

□ 동두천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40.63km²으로, 이는 시 전체 면적 중 42.5%에 해당됨. 시 전체가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미군부대가 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음

□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6개 기지로 모두 반환대상이나, 현재 3개 기지(캠프 님블, 짐볼스 훈련장, 캠프 캐슬)만이 반환됐고, 나머지 3개 기지는 미반환 상태임

○ 2007년에 반환된 캠프 님블의 경우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됐고, 일부는 군관사로 사용하고자 공사가 착수되었음. 2005년에 반환된 짐볼스 훈련장은 골프장 및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했으나 사업자를 지정 못함

○ 2015년 3월 13일 SOFA 합동위원회에서 캠프 캐슬 반환이 확정되어 현재 반환공여지 부지에 동양대 캠퍼스 유치를 추진 중임

[그림 1] 동두천 수변공원 전경(전, 동두천 캠프 님블)

○ 그 외 3개 기지는 이미 반환이 결정되어 2016년 반환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작년 10월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미2사단 일부(캠프 케이스 소속 210화력여단) 잔류를 결정함에 따라 현재 기지의 반환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임[8)]

[표 16]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반환) 구역 현황

기 지 명	소재지	반환여부	반환 활용계획	기타
총 6개소				
캠프 님블	상패동	반환('07. 5)	공원조성 및 군 관사 신축	완료(공원),공사착수(군 관사)
짐볼스 훈련장	탑동동	반환('05. 9)	골프장 및 체육시설	사업자 미지정
헬리포트	보산동	'16년 반환예정	유통상업단지, 공원	반환 연기
캠프 캐슬	동두천동	'16년 반환예정	교육연구시설, 산업클러스터	반환 (2015.3.4.)
캠프 케이시	보산동	'16년 반환예정	대기업 생산용지, 주거시설 등	반환 연기
캠프 호비	광암동	'16년 반환예정	골프장, 세계문화촌	반환 연기

자료: 동두천시 내부자료(2015)

[그림 2]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및 주변지역

8) 연합뉴스, 「미군 화력여단 잔류…동두천시 발전계획 차질」, 2014년 10월 24일자 보도자료.

(2)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 추진현황

□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는 18조 9,525억원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2014년까지 총 1조 6,346억원이 추진되어 추진율은 8.6%임

[표 17]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사업유형					
	소계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도로사업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자사업
계획	189,525	27,591	3,556	3,985	-	154,393
추진실적	16,346	267	1,759	1,298	-	13,021
%	(8.6)	(1.0)	(49.5)	(32.6)	-	(8.4)

주: 추진실적은 최종 수정된 종합계획 대비 2014년도까지 추진된 실적을 의미함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15)

□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보면, 반환공여지 사업은 1%의 진행률과 민자사업의 경우는 8.4%의 낮은 진행률을 보임

○ 반환기지 개발사업의 경우 2009～2016년까지 6개 기지에 29개 사업을 계획하였고, 민자사업의 경우도 2009～2020년까지 5개 사업을 계획했으나, 미군기지 반환지연과 반환완료기지에 대한 개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변지역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49.5%의 사업진행률을 보이고 있음

○ 추진내역을 보면, 주변지역 도로사업의 경우 10년간(2008～2017) 12건을 계획했는데, 4개는 사업완료(상패동~무궁화유지, 정장로, 아차노리, 신천), 5개소는 현재 추진 중(시가지우회, 상패로, 광암~마산, 동두천역세권, 선업교~상패교)이며, 2개는 미추진(영상문화산업단지, 국도3호선), 1개소는 사업을 포기(강변로선형개량 및 도로 횡단시설건설사업)함[9]

(3)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첫째, 반환공여구역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계획된 시기에 반환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캠프 캐슬 반환구역에는 동양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기로 학교 측과의 합의가 완료되었으나 계획대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

□ 둘째, 민자사업의 경우 투자할 개발사업 대상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움

> 우리 시는 민자사업으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으나, 반환기지인 짐볼스 훈련장은 2005년에 반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

□ 셋째, 동두천시는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기지를 매입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맞닿아 있는 기지이며, 두 기지 면적을 합하면 총 28.2km²에 달한다. 이러한 방대한 면적의 기지를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어렵다. <동두천시 관계자>

□ 넷째, 주변지역 도로사업의 국비보조율은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되고 있어,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지방비를 매칭하기 어려움. 미군 공여구역의 규모와 피해정도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하는 방안이 필요함

>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선정되면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조율이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동두천은 공여지역도 시 전체 면적의 42%이고 공여구역 주변지역도 시 전체임에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동두천시 관계자>

9)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승인현황」, 2015.

나. 경기도 포천시

(1)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

□ 포천시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면적은 총 15.11km²인데, 반환공여구역이 1.46km²로 9.7%를 차지하고, 미군 지속 공여구역은 13.65km²로 90.3%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속 공여구역이 상대적으로 많음

□ 미군기지 유형은 모두 훈련장으로, 국내 최대의 미군훈련장(영평훈련장)이 있으며, 이 외에도 포병훈련장, 바이오넷 훈련장 등이 있음

○ 바이오넷 훈련장의 경우 일부 시설(로드리게스#1)를 제외하고는 2004년에 반환되었고, 나머지 3개소(신북 릴레이, 왓킨스레인져, 영평사격장)의 경우는 지속공여구역임

[표 18] 포천시 주한미군 공여(반환) 구역 현황

기 지 명	소재지	반환여부
소 계		1개소
바이오넷 훈련장		반환
- 로드리게스#1	창수면	미반환
- 로드리게스#2	창수면	반환
- 로드리게스#3	창수면	반환
- 로드리게스#4	창수면	반환
- 훈련장320	전곡읍	반환
신북 릴레이	신북면	지속공여
왓킨스레인져 (훈련장)	영북면	지속공여
영평사격장 (훈련장)	영중면	지속공여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

(2)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 추진현황

□ 포천시의 발전종합계획 관련 사업은 총 4조 8,729억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이중 2014년까지 7,799억원이 투자되어 16%의 추진율을 보임

□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보면, 주변지역도로사업은 2,366억원 대비 1,784억원이 추진되어 75.4%의 높은 추진율을 보임

○ 타부처 사업은 계획 당시 320억원으로 정했으나, 이후 계획이 수정되어 2014년도까지 1,832억원이 소요되어 계획보다 많은 규모로 추진됨

- 환경부 지원사업인 “신평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처음에 320억 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이후 사업이 확장되어 총 1,832억원이 투입되었음 (국비 880억원, 지방비 164억원, 민자 788억원)

○ 지자체 자체사업은 320억원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추진되지 않았음

[표 19] 포천시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사업유형					
	소계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도로사업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자사업
계획	48,729	0	2,366	320	320	45,723
추진실적	7,799	0	1,784	1,832	0	4,183
%	(16.0)		(75.4)	(572.5)	-	(9.1)

주: 추진실적은 최종 수정된 종합계획 대비 2014년도까지 추진된 실적을 의미함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15)

□ [표 20]은 포천시의 민자사업 추진현황이며, 민자사업은 4조 5,723억원 계획 대비 4,183억원이 추진되어 9.1%의 저조한 추진율을 보임

○ 민자사업의 경우,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추진되고 있으나, 규모가 가장 큰 포천시 관광레저개발사업(3조 7,641억원)이 추진되지 못함

- 관광레저개발사업은 대상부지가 13.2km²에 달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나, 당초 사업시행자인 00관광개발이 제시했던 사업계획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새

로운 투자자를 탐색했으나 수익성이 맞지 않아 유치에 어려움을 겪음

○ 그 외 4개 사업 중에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포천신북리조트 조성사업을 계획에 따라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덕둔리 관광개발사업과 힐마루 관광레저 개발업이 50% 미만의 추진율을 보임

[표 20] 포천시 민자사업 추진현황

(단위: 억원)

사 업 명	기간	구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계획	45,723	0	2,306	43,417
		추진실적	4,183	206	0	3,977
신북면덕둔리관광개발사업	'08~'17	계획	512			512
		추진실적	208			208
포천시관광레저개발사업	'08~'17	계획	37,641		2,306	35,335
		추진실적	0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10~'13	계획	2,000			2,000
		추진실적	1,775	206		1,569
포천신북리조트 조성사업	'12~'15	계획	1,070			1,070
		추진실적	800			800
힐마루 관광·레저개발사업	'09~'16	계획	4,500			4,500
		추진실적	1,400			1,400

자료: 포천시 내부자료(2015),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15)

(3)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첫째,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쉽지 않음. 특히 민간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별법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인허가 등 절차의 간소화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심사는 다 거쳐야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는 큰 혜택이 아니라고 인식된다. <포천시 관계자>

□ 둘째, 발전종합계획의 추진시 국비와 지방비 5:5 비율은 불합리함

> 지금까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마련했으나, 올해 계획된 80억원인 국비와 매칭해 지방비를 마련하기 어렵다. <포천시 관계자>

□ 셋째, 주한미군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큼. 포천군의 경우 대부분 훈련장인데, 사격장에서 날아오는 포탄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피해가 크고, 민원사항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음

> 포천군의 경우 미군기지가 훈련장인데, 소음, 산불, 도피탄으로 인한 민간 파손 등의 주민피해가 많고, 이에 대한 보상도 미흡하다. <포천시 관계자>

다. 경기도 연천군

(1)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

□ 연천군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 및 반환공여구역은 1.02㎢이며, 이중에서 반환구역이 0.6㎢(61.9%)이고, 지속공여구역은 0.4㎢(38.1%)를 차지함

○ 연천군 미군기지유형은 모두 훈련장으로 3개 주한미군 기지 중에서 2개(감악산 ASA, 알라모 ASA)는 지속공여구역이며, 컨트레이닝 훈련장의 경우 일부 반환되고 일부는 지속 공여될 예정임

[표 21] 연천군 주한미군 공여(반환) 구역 현황

기 지 명	소재지	반환여부
소 계		
감악산 ASA	전곡읍	지속공여
알라모 ASA	신서면	지속공여
컨트레이닝 훈련장		
- 차파랄(7X-145)	미산면	반환예정
- 훈련장(7X-161)	미산면	반환

기 지 명	소재지	반환여부
- 훈련장(7X-165)	전곡읍	지속공여
- 로드리#17X-166	창수면	지속공여
- 로드리#27X-169	영중면	지속공여
- 로드리#37X-170	영중면	지속공여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

(2)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 추진현황

□ 연천군 발전종합계획의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3,999억원 계획 대비 2014년까지 1,738억 원 규모가 추진되어 43.5%의 추진율을 보였음

○ 주변지역 도로사업의 추진율은 91.1%로 계획 대비 높은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민자사업이 37.2%, 타부처 사업이 25.1%의 추진율을 보임

[표 22] 연천군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사업유형					
	소계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도로사업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자사업
계획	3,999	0	372	3,627	0	1,315
추진실적	1,738	0	339	910	0	489
%	(43.5)	-	(91.1)	(25.1)	-	(37.2)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15)

□ 주변지역 도로사업의 경우 대부분 완료했거나 진행 중임

○ 삼거~왕림간 도로사업과 고문~고포간 도로사업은 2014년도에 완료됐고, 현재 연천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2017년도에 완료될 예정임

□ 민자유치 사업은 3개 사업이 계획됐으나, 현재 2개 사업(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연천SOC실증연구센터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나, 대학유치 사업은 사업취소로 계획을 포기한 상태임

○ 백학관광리조트조성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은 2007년~2015년이고, 사업비는 민자로 1,350억원이며, 현재 공정률이 30%임

○ 연천SOC실증연구센터조성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은 2011년~2020년이고, 사업비는 1,500억원이며, 현재 공정률이 30%임

○ 대학유치사업의 경우 민자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2012년 4월 사업을 취소함. 그 사유는 복잡한 대학의 이해관계로 인해 대규모 유치가 어렵고, 신도시사업의 지연(타당성 용역중이며 경기침체로 사업자 유치 어려움) 등임

(3)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첫째, 연천군의 미군 반환구역 및 반환예정지역의 활용가치가 낮음

연천군은 미군 반환구역의 면적이 지속공여구역보다 넓은데, 반환예정지역의 경우 나대지가 많고, 교통접근성도 낮아서 활용가치가 낮다. 일부 반환지(전차훈련장 320)는 민간소유의 토지도 있어서 시 사업계획에 따른 매입절차 등이 필요하다. <연천군 관계자>

□ 둘째, 미군공여구역에 대한 지원 법률이 있으나,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각종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음

연천군은 경기도 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군이고, 인구가 5만이 안되고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도,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연천군 관계자>

□ 셋째, 반환된 구역에 민자투자사업 유치가 매우 어려움. 연천군은 미군부대 외에도 한국부대가 많고, 연천군의 90%이상이 군 관련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민자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움

라. 경기도 파주시

(1)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

□ 파주시의 경우 주한미군 관련 면적이 총 93.56㎢인데, 반환 면적이 84.87㎢로 90.7%를 차지하고, 지속공여 면적은 8.69㎢로 9.3%를 차지함

□ [표 23]은 파주시가 추진하는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현황 및 활용계획임

○ 파주시에 위치한 미군 캠프 6개(캠프 하우즈, 캠프 에드워즈, 캠프 자이언트, 캠프 개리오언, 캠프 스탠턴, 캠프 그리브스)는 2007년 4월에 모두 반환을 받았으며, 현재 시가 캠프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공원조성이나 교육연구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표 23] 파주시 주한미군 반환기지 현황과 활용계획

기지명	소재지	사업명	비고
캠프 하우즈 및 주변지역	조리 봉일천	공원조성, 도시개발	추진중
캠프 에드워즈 및 주변지역	월롱 영태리	교육연구시설	자유 제안 공모
캠프 자이언트 및 주변지역	문산 선유리	교육연구시설	
캠프 개리오언 및 주변지역	문산 선유리	도시개발	
캠프 스탠턴 및 주변지역	광탄 신산리	교육연구 복합단지	
캠프 그리브스	군내 백연리	DMZ체험, 안보체험 시설 등 공원조성	추진 중 ※DMZ체험은 개장

자료: 파주시 내부자료(2015)

[그림 3] 파주 DMZ 체험장(전, 캠프 그리브스)

(2)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 추진현황

□ 파주시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유형별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계획 총 5조 697억원 중에서 1조 1,456억원이 추진되어 22.6%의 추진율을 보였음

○ 첫째, 주변지역 도로사업은 88.0%의 추진율, 타부처 사업은 61.4%의 양호한 추진율을 보였음

○ 둘째, 반환공여지 지원사업은 1조 4,000억원 중 335억원 만이 추진되어 저조한 추진율(2.4%)을 보임

○ 셋째, 민자사업은 2조 9,239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계획됐으나, 6,154억원 만이 추진되어 21.0%의 추진율을 보임

[표 24] 파주시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사업유형					
	소계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도로사업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자사업
계획	50,697	14,000	1,471	5,986	0	29,239
추진실적	11,456	335	1,294	3,673	0	6,154
%	(22.6)	(2.4)	(88.0)	(61.4)	-	(21.0)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15)

□ [표 25]는 파주시가 추진하는 반환공여지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임

○ 현재 반환된 미군 캠프와 주변지역에 교육연구시설,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캠프 하우즈를 제외하고는 사업기간은 2017년임

○ 2015년 6월 30일 기준, 파주시 반환기지 사업현황을 보면 6개 중에서 2개(캠프 그리브스, 캠프 하우즈)는 사업에 착수했으나, 나머지 4개 사업은 아직도 사업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대학교를 유치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 파주시 반환기지별 사업 추진현황

반환 기지명	반환 일시	발전종합계획 (활용계획)	추진 현황	비고
캠프 그리브스	‘07.4	역사공원 조성	DMZ 체험관 개관(‘13.12), 공원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용역 착수(‘15.8.까지)	道 자체사업 (사업착수)
캠프 하우즈	‘07.4	근린공원	14.9.12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시행 승인	티앤티공작 (사업착수)
캠프 자이언트	‘07.4	교육연구	서강대 유치취소(종합계획 변경절차 이행 중, 교육시설→교육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미 지정
캠프 스텐턴	‘07.4	교육연구	국민대 유치취소(종합계획 변경절차 이행 중, 교육시설→교육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미 지정
캠프 에드워즈	‘07.5	교육연구	이화여대 유치 취소 (손해배상소송 2심 패소)	사업자 미 지정
캠프 게리오언	‘07.5	도시개발사업	-	사업자 미 지정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

(3)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파주시의 경우 미군기지를 대부분 반환받았는데, 반환공여지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봄

□ 첫째, 미군 반환공여지를 유상으로 매각해 평택미군기지 조성 등의 사업비로 충당하는 정책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봄

> 반환공여지는 대부분 경기북부지역인데, 그동안 피해를 입고도 묵묵히 있었던 지역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적다. 국가지원은 평택기지와 용산공원 조성에 집중되고 있어서 기지이전정책 간의 형평성이 적다. <파주시 관계자>

□ 둘째,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시 국비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지방비가 투입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시가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음

마. 경기도 의정부시

(1)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

□ 의정부시의 경우 미군기지가 9개소이며, 이중에서 캠프 콩코드를 제외한 5개 캠프(캠프 라과디아, 캠프 홀링워터, 캠프 에세이욘, 캠프 카일, 캠프 시어즈)는 반환됐고, 3개 캠프(캠프 잭슨, 캠프 레드 크라우드, 캠프 스탠리)는 2016년도 이후에 반환될 예정임

○ 반환면적이 5,707,400㎡이고, 주변의 활용면적이 2,213,900㎡에 이르고, 전 지역이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표 26]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기지 현황과 활용계획

기지명	소재지	반환여부	활용계획
캠프 라과디아	가능동,의정부동	반환(2007.4.13.)	도로, 체육공원, 도서관
캠프 홀링워터	의정부역앞	반환(2007.05.31)	근린공원 등
캠프 에세이욘	금오동	반환(2007.05.31)	경기도교육청2청, 교육연구시설 등
캠프 카일	금오동	반환(2007.05.31)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등
캠프 시어즈	금오동	반환(2007.05.31)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등
캠프 잭슨	호원동	’16년 이후 예정	근린공원, 도로 등
캠프 레드크라우드	가능동	’16년 이후 예정	교육연구시설 등
캠프 스탠리	고산동,용현동	’16년 이후 예정	종합대학유치, 체육공원 등

자료: 의정부시 내부자료(2015)

(2)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 추진현황

□ 의정부시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조 2,172억원 규모로 계획되어 2014년까지 3,684억원이 추진되어 16.6%의 추진율을 보임

[표 27] 의정부시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사업유형					
	소계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도로사업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자사업
계획	22,172	21,392	780	0	0	0
추진실적	3,685	3,307	377	0	0	0
%	(16.6)	(15.5)	(48.2)	-	-	-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15)

□ 사업유형별로 보면, 반환공여지 지원사업의 경우 2조 1,392억원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3,307억원이 추진되어 15.5%의 추진율을 보임. 주변지역도로사업은 780억원 대비 377억원이 추진되어 48.2%의 추진율을 보임

[표 28] 의정부시 반환(예정)기지별 사업 현황

기지명	반환일시	발전종합계획 (활용계획)	추진 현황	비고
캠프 라과디아	2007.4	도로, 도서관, 체육공원	도로구간 일부준공(‘12.6) 북측 지구단위계획 고시예정(‘14.10)	의정부시
캠프 홀링워터	2007.5	근린공원	북측공원 토지매입완료(‘13.6)	의정부시
캠프 에세이욘	2007.5	교육연구 및 부속병원	제2교육청사 준공(‘14년 12), 을지대 착공(‘15년 초)	경기도교육청/을지재단
캠프 카일	2007.5	경기북부광역 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착수준비 중	의정부시
캠프 시어즈	2007.5	경기북부광역 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준공(‘13.6)	의정부시

자료: 의정부시 내부자료(2015)

□ 의정부시의 경우 2007년에 주한미군 기지를 반환받아서, 도시개발사업, 대학유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캠프 에세이욘 기지와 주변지역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신축해서 2015년 2월 24일에 이전까지 함

[그림 4] 의정부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전, 캠프 에세이욘)

○ 의정부시는 향후 을지대학교 캠퍼스와 대학병원도 반환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에 건설할 예정임. 을지재단은 지난 2월 교육부로부터 대학이전을 승인받았고, 의정부캠퍼스는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에세이욘에 건립될 계획임

○ 캠프 카일과 캠프 시어즈 일대를 중심으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을 건설할 예정인데, 총 13개 기관으로 면적은 총 128,581㎡에 해당됨

[표 29]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광역행정타운 건설계획

구 분	기 관 명	
	명 칭	면 적
합 계(13)	13개 기관	128,581㎡
입주확정 (10)	경기지방경찰청제2청	32,709㎡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9,061㎡
	의정부소방서	
	의정부보호관찰소	5,5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3,608㎡
	건강보험공단	2,500㎡
	대한적십자사	2,400㎡
	한국석유관리원	1,500㎡
	근로복지공단	4,010㎡
미확정(3)	의정부지방법원	32,055㎡
	의정부지방검찰청	32,055㎡
	2구역 업무용지	1,182㎡

자료: 의정부시 내부자료(2015)

(3)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의정부시의 경우 2007년도 주한미군 캠프 5개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해서 반환받고, 그간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그동안 반환기지의 매입과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음

□ 의정부시의 경우 우선, 중앙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의 미군반환구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용산과 평택에 비해서 차별적이다. 평택이 새로운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이 전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에 따른 재원을 기존 미군공여구역의 국유지 판매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의정부시 관계자>

□ 둘째, 기초자치단체에서 반환공여지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웠음.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국토 종합·체계적 개발이란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나서는 방안이 필요함

> 의정부시에 있는 캠프 레드크라우드의 경우 한국전쟁 역사적 자료의 소장가치가 있는 캠프이기 때문에 용산공원과 같이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국가적 역사, 문화관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정부시 관계자>

□ 셋째,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보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향후 상향 조정이 필요함

> 도로와 공원의 토지매입비 국비보조율의 경우 현행 6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반환공여구역내 도로와 공원 공사비에 대해 국비보조는 현재 0%에서 80%, 그리고 주변지역사업비 국비보조율은 현행 50%에서 80%로 상향이 필요하다. <의정부시 관계자>

바. 전라북도 군산시

(1)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

□ 전라북도의 경우 군산시에 유일하게 주한미군 기지가 2개소가 있으며, 군산 에어베이스(군산비행장)와 군산 폴터미널(유류저장소)가 해당됨

○ 주한미군 비행장은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환계획이 없으며, 미군에게 계속 공여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115.59㎢(대통령령지정 8개 읍·면·동)가 해당됨

(2)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 추진현황

□ 군산시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총 2,461억 원 계획 대비 1,440억 원이 추진되어 58.5%의 추진율을 보임

○ 시는 주변지역도로사업과 타부처사업만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지역도로사업이 1,561억원 대비 826억원이 추진돼 52.9%의 추진율이고, 타부처사업이 900억원 대비 613억원이 추진돼 68.1%의 추진율임

[표 30] 군산시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사업유형					
	소계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도로사업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자사업
계획	2,461	0	1,561	900	0	0
추진실적	1,440	0	826	613	0	0
%	(58.5)	-	(52.9)	(68.1)	-	-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15)

□ 군산시의 경우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순위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은 도로건설 사업임

○ 2015년 1월 현재, 사업완료는 4개소(중야로, 타운로, 백토고개, 공항로)이고, 추진 중은 4개소(미성~열대자, 소룡동, 옥서면, 미룡동), 설계추진은 1개소(지방도 709호선), 미착수는 4개소(신풍, 해신, 대학로, 미옥선)로 나타남

(3)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먼저,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시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측면이 많은데, 당시 주로 도로사업을 위주로 추진시킴

계획 당시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을 우려해서 대부분 지자체가 도로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했다. 주민들은 시급하지 않은 도로사업에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제기할 때가 많았다. <군산시 관계자>

□ 둘째, 2008년 계획수립시 배정된 지역별 지원사업비 총액으로 고정해서 변경이 쉽지 않음. 계획수립 이후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액 산정, 물가상승 등 사업비상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음

□ 셋째, 발전종합계획에서 주변지역 도로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5:5인데, 지방비를 마련하기 쉽지 않음

현재 군산시는 배정된 국비는 다 소진하고, 시비 160억을 사용하지 못한 상황인데, 국비에 매칭해 지방비를 50% 내기가 어렵다. <군산시 관계자>

□ 넷째, 군산시의 경우 미군공항 주변지역에서 전투기 관련 소음 민원이 많음.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등 지역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사. 강원도 원주시

(1)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

□ 강원도의 미군 공여지역은 춘천과 원주, 영월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원주시에 미군 캠프 3개(롱, 이글, 에어)가 있음

○ 원주시의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3면 5동(소초면, 호저면, 지정면, 태장1동, 태장2동, 우산동, 봉산동, 행구동)이 해당됨

□ 원주시에 있는 3개 미군 캠프는 모두 반환예정이나, 아직까지 반환절차가 완료되지 않음

○ 캠프 롱의 경우 반환을 받으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반환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있음.

- 2010년 6월에 기지가 폐쇄되고, 2013년 6월에 토지매입협약을 체결(국방부⇔원주시)했으며, 2014년에 토지매입 대금도 지불했으나, 아직까지 반환이 되지 않고 있음. 반환이 지연되는 이유는 SOFA 합동위에서 환경오염 비용부담 등에 대해 합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표 31] 강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현황

소재지		기지명	비고
강원 (5개소)	춘 천	캠프 페이지	기 반환
	원 주	캠프 롱	반환예정
	원 주	캠프 이글	반환예정
	원 주	원주 에어	반환예정
	영 월	필승 에어	반환예정

(2)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 추진현황

□ 원주시 발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보면, 총 1,909억 원 계획 대비 534억원이 추진되어 28%의 추진율을 보임

□ 사업유형별로 추진실적을 보면, 반환공여지 사업은 32.8%, 주변지역도로사업은 89.7%, 타부처 사업은 추진실적이 없음

○ 주변지역도로사업은 대부분 추진되어 2017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반환공여지 사업과 타부처 사업은 추진율이 낮은 실정임

[표 32] 원주시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사업유형					
	소계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도로사업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자사업
계획	1,909	1,094	195	620	0	0
추진실적	534	359	175	0	0	0
%	(28.0)	(32.8)	(89.7)	(0.0)	-	-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15)

□ 원주시의 반환 공여지인 캠프 롱의 경우 2010년 6월에 기지가 폐쇄되었고, 2014년 12월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방침이 결정됐으며, 그간 3차에 걸쳐 토지매입대금을 납부했고, 올해 하반기에 토지매입대금을 완납(164억원→694억원)할 예정임

○ 캠프 롱 기지의 공원화 사업은 2013년~2018년까지 계획이며, 사업비는 1,094억원(부지매입비 694억, 시설비 400억)임. 토지매입비의 경우 국비가 65%, 시비가 35%(국비 451억, 시비 243억)이고, 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400억이 들 것으로 예상함

[표 33] 원주시 발전종합계획 반환공여지 사업내역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총계	1,094	451	643	-	
(캠프 롱) 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	694	451	243	-	
(캠프 롱) 문화체육공원 조성	400		400	-	

자료: 원주시 내부자료(2015),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15)

(3)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첫째, 미군과 환경부 간 토양오염 복원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시의 공원조성 사업 등의 추진이 어려움. 시는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 대응수단이 없음

> 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계획에 따라 어려운 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캠프롱 부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79% 토지매입 대금을 납부했고, 내년 상반기에 납부가 완료된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한지 5년이 지나도록 부지 반환이 안돼서 공원조성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

□ 둘째, 반환기지의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 사업비 등을 시비로 마련하기 쉽지 않음. 토지매입비는 일부 국비지원이 있으나, 나머지 비용을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하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조달해야 함

아. 대구광역시 남구

(1)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

□ 대구에서 미군기지는 총 6곳으로 남구의 캠프 워커를 비롯한 캠프 헨리,

캠프 조지 3곳과 동구 에어베이스, 중구 스토리지(통신기지), 달성군 다트보드(통신기지)가 있음

□ 대구 남구에 위치한 3개 미군기지의 총 면적은 1,087,90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남구 면적(17.44㎢)의 6.2%를 차지함. 미군기지가 도심 한가운데 있고, 캠프 워커는 헬기장이 있어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음

○ 캠프 워커의 경우는 반환예정이나 아직까지 반환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나, 추후 반환공여지에는 공원을 조성할 예정임

[표 34] 대구광역시 주한미군 공여(반환)구역 현황

기지명		기지명	반환여부
대구	남구	캠프 워커	반환예정
		캠프 핸리	지속공여
		캠프 조지	지속공여
	달성	다트보드	지속공여
	중구	대구 스토리지	지속공여
	동구	대구 에어베이스	지속공여

자료: 대구 남구청 내부자료(2015)

(2)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 추진현황

□ 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 발전종합계획의 지원사업은 총 1,700억원이 계획되었으며, 이 중 664억원이 추진되어 39.1%의 추진율을 보임

□ 세부 추진실적을 보면, 반환공여지 사업이 61.7%, 주변지역 도로사업이 78.3%, 타부처사업이 31.9%, 지자체 자체사업이 3.9%의 추진율을 보임

○ 반환공여지 사업과 주변지역도로사업의 추진율이 높은데 비해, 지자체 자체사업의 추진율이 낮음

[표 35] 대구광역시 남구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사업유형					
	소계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도로사업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자사업
계획	1,700	449	161	734	357	0
추진실적	664	277	126	234	28	0
%	(39.1)	(61.7)	(78.3)	(31.9)	(3.9)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15)

□ 반환공여지인 캠프 워커와 관련된 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캠프 워커 도로 및 공원부지매입사업('10～'17), 캠프 워커 도로건설공사사업('14～'17), 캠프 워커 공원조성공사사업('14～'17)이 있음

○ 부지매입비의 국비 보조율은 66.6%이며, 2014년까지 총 315억원 중 272억원이 추진되었으며, 최근 반환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음. 부지내 도로건설 및 공원조성공사는 아직 반환이 완료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함

[표 36] 캠프워커 반환공여구역 사업추진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			'14년까지 추진현황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448.7	210.5	238.2	277	210.5	66.5
캠프 워커 도로, 공원 부지매입	315.7	210.5	105.2	272.8	210.5	62.3
(캠프 워커) 도로건설공사	89.0		89.0	3.0	0.0	3.0
(캠프 워커) 공원조성공사	44.0		44.0	1.2	0.0	1.2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15)

(3)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남구의 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하는데 국비에 매칭할 지방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계획에 주변지역 도로사업,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남구청의 재정자립도는 10.7%로 매우 낮은데, 발전종합계획으로 인해 관련 사업들을 국비와 매칭해 지방비를 마련하는 상황이다. <남구청 관계자>

□ 둘째, 대구시는 캠프 워커 반환지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부지매입비와 조성공사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셋째, 미군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에 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 재원을 마련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남구는 미군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구청 역시 재산상의 손해가 많은데, 시가지에 미군이 있어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걷을 수 없는 등 재산상의 피해도 있다. <남구청 관계자>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는 과거 하야리야 기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부산광역시에 기지가 반환된 이후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2014년 5월에 개장함

○ 부산광역시가 주도하여 조성한 시민공원은 미군 반환기지에 공원이 조성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음

[그림 5] 부산시민공원 전경

□ 시민공원 추진경과를 보면, 2004년 8월에 하야리야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고, 2006년에「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공원토지매입비를 중앙정부가 66% 부담하기로 협의함

○ 이후 2006년 8월에 캠프 하야리야가 폐쇄되고, 2010년 1월 13일에 캠프 하야리야의 반환이 완료되었고, 2011년 8월에 시민공원 조성사업(토목·건축분야) 착공을 시작하여 2014년 5월에 공원을 개장하였음

○ 하야리야 부지의 근린공원 조성 결정부터 부산시민공원 개장까지 약 10년이 소요되었음

[그림 6] 시민공원내 공원역사관(캠프 하야리야 당시 장교클럽 리모델링)

(2) 주한미군 반환구역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해결과정

□ 주한미군이 캠프 하야리야 부지를 반환하면서 부산시의 토지매입 비용 부담이 큰 문제였음

○ 하야리야 부지반환방식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충당을 위하여 해당 부지를 매각할 방침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산시는 부대주둔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에 대한 국가적 보상차원에서 부지의 무상양여를 주장하여 두 기관간 갈등양상이 전개되었음

○ 이러한 갈등은 국회로 이어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으로 반환공여지역을 무상양여·무상사용하거나 지자체의 매입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국유재산법」상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시 미군기지이전 재원의 부족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결국,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반환부지에 도로·하천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60% 이상 80% 이내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

○ 부산시민공원의 경우 부지매입비의 66%를 국비로 지원하는 안으로 합의됐으며, 시는 토지매입비 4,875억원 중 1,624억원을 5년간 분할납부함

□ 둘째, 반환기지 내 환경오염정화문제를 들 수 있음

○ 하야리야 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부대폐쇄 이후 미군 측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조치를 취한 바 있음. 그러나 이후 반환된 일부 기지에서 지속적으로 오염이 발생하자 양국은 반환기지 오염도 조사를 위해서 환경평가를 추가하고 50일이던 현장조사기간을 15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동환경평가 절차서」(JEAP)도입에 합의함

○ 그 후 이루어진 환경조사에서는 기지내 토양오염이 발견되었으나 SOFA

합동위원회는 해당 면적이 전체 규모에 비해 매우 적으며(동 부지의 0.26%)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어 시급한 지역 개발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한 반환이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요청 등을 감안하여 현 상태에서 반환하기로 결정하였음[10)]

○ 한편, 기지반환 이후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오염정화사업이 시행되었는데, 환경오염 정화사업 결과 총 오염량은 95,877m²이었고 총 비용은 143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였음[11)]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

(1) 획일적인 계획편성으로 인한 지역특성 반영 부족

□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시 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에 충분한 논의시간을 갖지 못하고, 급하게 진행됨으로써 이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특별법이 시행되자 행정자치부는 2006년 9월 22일 발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 지자체들이 2007년 1월 말까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음.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 비전과 목표를 마련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기에 촉박한 시간이었음[12)]

---

10) 환경부 보도자료, “반환 미군기지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시범 적용 완료”, 2010. 1. 14

11) 부산광역시, 『부산시민공원백서』, 2014, p.103∼134.

12) 한배수,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이대로 좋은가』, 정성호의원·경기도 공여구역자치단체협의회·경기북부상공회의소연합회 주관, 2007, p.52.

○ 결국, 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역별 특성에 맞춰 다양화되지 못하고, 천편 일률적으로 추진된 문제가 있음[13)]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종합계획 수립내용은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전업 지원,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사업,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 내용을 포함토록 했음

○ 그러나 실제 발전종합계획의 경우 SOC 시설 확충, 그 중에서도 도로사업에 대부분 치중되어 있음

(2) 계획수립 당시 의견수렴 절차 및 타당성 검토 미흡

□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발전종합계획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합하고 이를 행정자치부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차례 이루어짐

-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획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전체 발전종합계획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과 중앙부처의 장과의 협의절차만 있고 공식적인 타당성 검토절차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13) 오은주·박진경·한인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p.103.

□ 특히 사업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절차가 미비함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종합계획에 포함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동두천시의 자유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약 11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는데, 이와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3) 지자체와 주한미군 및 중앙정부 간 소통 채널 부족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지자체들의 경우 미군 이전과 관련된 정책에서의 주요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관련 정책 수립·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임

□ 특히 미군의 반환연기 등 각종 정책변경이 지자체에게 적시에 전달되지 않음에 따라, 반환공여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환경변화에 대응해 전략을 수립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14)]

○ 예를 들어, 동두천시의 경우 미2사단 일부가 이미 반환이 결정되어 2016년 반환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10월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잔류가 결정됨에 따라 당초에 계획했던 대학, 생산관련시설 유치 등이 어려운 상황임

○ 원주시의 경우 시에 주둔한 미군기지를 반환받고, 토지매입협약 대금도

14) 최용환, 「전시작전권 환수연기에 따른 동두천 지역 대책」, 『정책브리프』, 경기개발연구원, 2014.

대부분 납부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주한미군과 환경부 간 토양오염 복원에 관한 협상 결렬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협상과정에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없어 지자체는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 대응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 한편,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과 관련된 사업은 많은 중앙부처가 동시에 관여되는 범정부 참여 사업인데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어서 부처간 업무협의 및 조정이 제한적임

○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이지만 담당인력이 적고, 여러 중앙부처들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의 문제점

(1)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 지원 저조 및 지원대상 협소

□ 현재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토지구입비의 일부와 공사사업비 전부를 마련해야 하는데 재정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15)]

□ 첫째,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위해서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우선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현행 법률상 반환공여지내 국유지를 매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입소요 경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60~100%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사대상 지역의 경우 약

15) 김태경,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2, p.12.

66%정도 보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 규정은 과거 국비지원의 범위가 60～80%였으나, 최근 개정되어 국가 지원비율의 상한이 폐지되어 80%이상 지원이 가능해졌으나 80% 이상 지원되는 지자체가 없어 법 개정의 실효성이 미흡함[16)]

○ 또한 미군 반환공여지의 매입비는 현재 지목이 대지 등 잡종지로 분류되어 매입비의 일부를 국비로 보조받더라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매우 큼

- 파주시와 의정부시의 경우 그동안 정부로부터 반환기지를 매입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매입금을 마련하는데 큰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힘

□ 둘째, 현재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 매입경비의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서는 도로·공원·하천에 대해서만 일부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들이 반환공여구역을 해당 시설에 한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임

□ 셋째,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시 공사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전액 지방비로 조달함으로써 지자체에서는 재정부담을 호소함[17)]

---

16) 시행령 개정(2010.6.15.)에 따라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의 경우 도로·하천의 경우 소요경비의 60% 이상으로, 공원의 경우 당해 지자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소요경비의 60% 이상, 그 외는 매입 소요경비의 50% 이내 지원할 수 있으며(령 제14조), 소요경비의 국비지원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 및 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면적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함

17) 김태경,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2, p.12.; 전대욱·오은주·박승규,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활용한 지역 성장동력 제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pp.32~34.

○ 특히, 지자체들이 반환공여구역을 공원조성 등 시민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에 공원 조성사업비와 더불어 운영비 등에 지자체 재원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한계가 있음

(2)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관련 지역개발사업의 높은 지방비 비중

□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자체 사업에 정부가 국비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방비의 비중이 높아 지자체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제기함[18)]

○ 이는 현장조사 대상인 9개 지자체 모두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정부지원 사업의 문제점이었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국가보조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의 기준보조율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80%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원사업에서 보조금법상 기준보조율과 동일한 보조율로 지원하고 있음

-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매칭하고 있으며, 그 밖의 타부처사업의 경우에도 국비와 지방비 매칭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타부처 사업 중 소하천정비사업의 경우 보조금법상 기준보조율이 50%인데, 발전종합계획상 국비보조율 또한 50%로 지원되고 있음

18) 장인봉·박한성,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경기북부의 경제적 손실과 반환기지 개발 지원 대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3권 제2호, 2013, p.228.

다. 민자사업 유치제도의 문제점

(1) 민자사업 유치 관련 법령의 추상성과 타법과의 연계성 부재

□ 현재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국세·지방세 등의 세제 혜택은 지원되지 않고 있음

□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혜택이 추상적으로만 언급되어 있음

○ 법 제35조의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규정에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면의 범위와 비율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19]

□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민간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이 관계된 타 법률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감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19)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조사결과,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파주시 등의 경우 주한미군 반환기지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실효성 있는 민자유치 유인제도의 부재

□ 민간사업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경우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혜택이 집중되어 있고 민간사업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또한 현재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있음

□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지 매입비의 60%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상건물의 무상양여[20], 장기분할상환[21]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없는 상황임

---

20)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

21)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민자사업의 경우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수익성 보장,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이 없어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가 30%이상 추진된 것에 비해 민간자본의 추진율은 3%로 저조한 상황은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는 주장의 방증이 될 수 있음

□ 또한 인허가의제 제도는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간소화 제도로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인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하므로 유인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포천시 등에 따르면, 인허가의제 제도가 있어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는 다 거쳐야 하므로 민간사업자 입장에 있어 큰 혜택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음

Ⅳ. 향후 개선과제

1. 기본방향

가. 정책의 추진방향

□ 앞으로 정부정책의 경우「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특별법의 제정목적은 해당 지자체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지역 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임[22)]

○ 해당 법안이 발의될 당시 입법취지를 보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불이익을 감수해 온 주한미군기지 설치 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음[23)]

□ 따라서 미군 공여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은 낙후되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단순히 지역의 재생(再生) 정책에 머물지 말고, 지역의 창생(蒼生)정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의 방향이 필요함

---

22) (제1조)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국회행정자치위원회,『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문희상의원 대표발의】,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재창의원 대표발의】, 주한미군이전에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김병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5, p.13.

○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기반시설, 환경, 문화, 교육 등의 인프라 건설과 개발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나. 정부의 책임과 의무

(1) 중앙정부의 역할

□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평택의 미군기지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며, 이와 함께 반환됐거나 반환될 기지의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함

○ 평택미군기지의 건설비용 일부는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사업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음

□ 따라서 미군의 반환공여구역을 소유하고 이를 지자체에 판매하는 국방부는 반환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이 있는 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 및 관리하는 행정자치부는 1차 발전종합계획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2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환공여지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정책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24)]

24) 김동성,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GRI 정책이슈, 경기개발연구원, 2011. p.3.

○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사업[25]과 평택기지건설사업[26]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반면 그간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지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은 정부의 지원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음

○ 따라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국가가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2) 지방정부의 역할

□ 미군 공여 및 반환공여구역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함

---

25)「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6)「미군이전평택지원법」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평택시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여 및 반환공여구역 등과 관련된 사업들의 경우 사업기간이 대부분 수년에 걸쳐 수행되는 중·장기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민선자치단체장의 교체여부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중단되지 않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 그리고 관련 계획을 수립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 중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자체가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2017년에 완료될 제1차 발전종합계획의 사업 중에서 국비와 지방비가 5:5로 부담하는 SOC기반조성 사업 중에서 국비를 이미 사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매칭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사례도 있음

○ 향후 자치단체 역시 관련 사업으로 인해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연간 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져야 할 것임

□ 한편,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발전종합계획은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또는 신청을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에 제출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수립됨. 그러나 현재 공여구역 관련 정책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미미함

□ 향후 광역자치단체의 개입을 통해 광역거점지역에 대한 시·도 차원의 구상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각 지자체 간의 기능 조율로 합리적인 조정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27)]

○ 특히 경기도 동두천시와 같이 미군 주둔지역의 범위가 큰 지역은 향후 기지반환시 대규모 시개발이 전개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독자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28] 동두천시의 경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어 옴[29]

□ 따라서 미군 반환구역의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이 필요함

2.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개선

가. 발전종합계획의 타당성 심사절차 강화

□ 그동안 발전종합계획의 저조한 추진율은 민자유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임

○ 이처럼 민자사업의 추진율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주한미군의 반환연기 등 환경적 요인이 있으나, 이와 더불어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당초에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발전종합계획 수립단계에서 민자사업과 같이 사업의 규모

27) 이상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2006, p.45.

28) 권배근,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당위성에 관한 검토」, 『법과 정책연구』, 제12권제3호, 2012.

29) 2008년 12월 4일 김성수의원대표발의로 「주한미군 공여구역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가 큰 경우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에서도 행정자치부와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심사가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제2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자체가 민자사업의 유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2017년에 정부가 수립할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에 대한 종합계획'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개발 수요와 잠재력을 고려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전종합계획은 2017년까지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제2차 발전종합계획의 경우는 다양한 지자체 사업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전국의 주한미군 공여 및 반환구역이 있는 지자체의 지역특성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한미군 관련 사업의 목표를 경제활성화, 전통시장활성화, 도심재활성화, 교육복지활성화, 문화관광활성화, 역량강화, 환경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30]

□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30) 오은주·박진경·한인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p.103.

○ 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기초조사,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시·군·자치구가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위 정부(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컨설팅 지원 등 지원자 역할이 요구됨

다. 범정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마련

□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참여한 범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협의체 구성방안으로는 첫째, '(가칭)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정부위원회 형식으로 신설하는 방안과 둘째,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에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분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첫째, 별도의 정부위원회를 설립할 경우에 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

○ 제19대 국회의 입법동향을 보면, 2015년 7월 20일자로 김희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1]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이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31) 제3조의2(지원단 설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2009년 법 개정시 동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위원회를 폐지한 전례가 있고[32] 비록 설립 목적은 다르지만 국무조정실에 유사한 주한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정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 새로운 위원회가 설치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에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분과로 설치하는 방안임

○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이전사업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 갈등 관리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를 둠[33]. 그리고 이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단'[34]을 두었음

○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협의회에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논의할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분과로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실무간사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국무조정실과 국방부를 포함해 주요 중앙부처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관련 개발사업과 미군기지이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임

32)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당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2009년 12월 29일 일부개정시 동 규정이 삭제되었다. 당시 동 위원회의 폐지이유를 보면,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이 위원회가 폐지되었다.

33)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3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근거해 설치했고, 시행령 제5조의2에 조직 및 운영규정을 두었다. 구체적 운영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국방부훈령)에 근거하고 있다.

3.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개선

가. 반환공여구역의 정부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대상과 지원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첫째,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해당 지자체가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시에 현행 법률상 국유지 매입경비의 최소 60% 이상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소 규정을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하천·공원에 대해 국비지원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지원수준이 하한선에 머무르고 있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이 없었음

○ 따라서 반환공여지 토지매입비의 경우 최소 국비지원율을 60%에서 70%이상으로 상향하는 입법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미군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 매입경비를 지원하는 대상이 현재 도로, 하천, 공원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에 공공시설(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추가해 확대하는 방안이 있음[35)]

○ 현행 법률에서는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에 건설하는 도로·하천·공원만을 대상으로 국가가 매입경비를 일부 지원(최소 60%이상)하고 있으나, 반환부지 활용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도 매입경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5) 김태경,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 GRI 정책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2, p.22.

○ 다만, 공공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은 현재에도 타 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에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시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경우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36)]

○ 제19대 국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으로 김희국의원 대표발의안(2015.7.20.)과 문희상의원 대표발의안(2012.09.25.)이 국회에 계류 중임

○ 문희상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토지매입비 지원의 범위를 공공 및 문화체육시설 조성으로 확대했으며, 김희국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도 국유지 토지매입비의 범위를 도서관과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등으로 확대시켰음

[표 37]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구입 및 사업비 지원 관련 입법안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한미군공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김희국의원 (2015.7.20.)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국고보조율을 최소(70%)와 최대(90%)로 규정하고,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문화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34조의3 신설)
문희상의원 (2012.09.25)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하천·도로·공원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4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34조의2제1항 신설)

36) 전대욱·오은주·박승규,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활용한 지역 성장동력 제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p.183.

나. 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

□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최소 보조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지자체 사업에 대해 국가가 최대 80%까지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율은 평균 50% 정도에 불과함

□ 따라서 법령상으로 국가의 최소 보조율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최소 60% 이상, 최대 90%까지 범위를 상향하여 정하는 등의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음

○ 제19대 국회에서는 김희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5.7.20.)에 국고보조율 수준을 최소 70%에서 최대 90%로 규정하는 안이 있음

4. 민자사업의 유치 활성화 방안

가. 법령상 감면대상과 범위의 구체화 필요

□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세제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

□ 이와 더불어 민자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이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연관된 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함께 개정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37)]

○ 현재 제19대 국회에서는 주한미군 반환구역에서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연관된 여러 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황진하의원 대표발의(2013.5.3.)와 정성호의원 대표발의(2013.3.26.)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촉진을 위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함

-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2013.2.13.)에 반환공여구역에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반환공여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제안함

-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2012.12.24)은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을 제안함

37) 임상수,『공여구역·접경지역 등 투자촉진을 위한 연구: 조세감면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2012, p.82∼86.

[표 38]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민간투자시 세금감면 관련 입법안

입법안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황진하의원 (2013.5.3)	해당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낙후지역인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도모(안 제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	황진하의원 (2013.5.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정성호의원 (2013.3.26.)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낙후지역인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농지법」일부개정안	황진하의원 (2013.5.3)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초지법」일부개정안	황진하의원 (2013.5.3)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초지법」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정성호의원 (2013.2.13)	반환공여구역에서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반환공여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정성호의원 (2012.12.24)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반환공여구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나. 민자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 주한미군 반환 및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민간자본투자 유치가 내실화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으로는 민간사업시행자가 반환공여구역 내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활용을 희망할 경우에 무상 양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음

○ 2015년 4월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했는데, 민간사업시행자가 반환공여구역 내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활용을 희망할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이를 제거하지 않고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5항). 이 규정은 2013년에 국회에 발의한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안(2013.4.4.)[38]의 내용이 반영된 것임

□ 또한 민간사업자의 부지매입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금융지원제도로 반환공여지 매입비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임

○ 재무구조가 건전하거나 또는 재원조달계획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반환공여지 매입비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최근 지역개발사업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합동방식(Public-Private

38) 민간사업자도 기존의 시설물 등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8항 신설)

Partnerships, PPP)이 증가하고 있으며[3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민간투자사업 또한 추진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모색할 필요 있음

- 민간투자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BTL(Build Transfer Lease),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 외에도 준 BOO(Build Own Operate) 방식 및 제3섹터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준 BOO방식이란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공공기관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수용하고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종료한 후 사업권을 민간기업에 양도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말함

- 인허가절차 및 토지수용에 익숙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를 대신하여 지자체가 수행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제3섹터 방식이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 주체를 통해서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함

- 제3섹터 방식을 통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민간의 사업추진 노하우를 통한 수익성 향상, 예산편성절차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공동출자에 따른 재원조달 부담 절감, 인허가 업무 협조 용이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자칫 민자유치 정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현재 토지수용 권한을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39) 백성준·서후석·박용석,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3집 제3호, 2007, p.47-49.

투기 등 민간자본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할 필요가 있음[40)]

○ 결국 반환공여구역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면서도 규제정책을 통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지역의 발전방향에 조응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지자체의 경우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강화하고, 민자유치사업 심의과정을 철저히 하는 등 절차적 강화 방안이 있어야 하겠음

40) 전대욱·오은주·박승규,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활용한 지역 성장동력 제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p.187; 오은주·박진경·한인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p.109.

Ⅴ. 결론

□ 이 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권역별 현장조사를 통해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17)'의 경우 2017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계획 대비 추진율이 낮은 편임

○ 이는 미군 반환공여 일정이 연기되는 등의 외부환경적 요인도 있으나, 형식적·획일적인 계획 편성,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의 부족 등의 내부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현장조사 결과, 지자체들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동일한 미군기지 이전 지원사업 임에도 평택기지 건설,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음. 그리고 주한미군·중앙정부·지자체 간의 정보공유 및 소통의 어려움, 정부의 미온적인 추진자세 등이 발전종합계획 추진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의견을 보였음

□ 향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종합계획이 지속가능성 있게 추진되기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입법취지를 반영한 정부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설정되어야 함. 특히 미군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단순히 지역 재생(再生) 정책에 머물지 말고, 새롭게 지역이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역 창생(蒼生)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며, 또한 지자체 역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수립과 집행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둘째,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함. 계획의 타당성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방안과 향후 수립될 제2차 계획의 경우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음

○ 셋째,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측면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정부지원 대상과 지원비를 확대하는 한편, 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보조율의 최소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 등이 있음

○ 넷째, 그동안 실적이 저조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유인정책이 필요함. 현재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지원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감면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관파트너십(PPP)과 같은 다양한 사업추진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러한 유인정책과 함께 부실사업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평택의 새로운 미군기지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설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환됐거나 반환될 기지 주변지역의 지역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 있음

○ 또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단순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주한미군 기지의 재배치 사업의 일환이고 그동안 공여지 제공으로 인해 피해 받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평택과 용산기지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중앙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각 부처 간의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단행본]

오은주·박진경·한인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이상규,『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 경기도, 2006.

임상수, 『공여구역·접경지역 등 투자촉진을 위한 연구: 조세감면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전대욱·오은주·박승규,「주한미군 반환기지를 활용한 지역 성장동력 제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정기간행물 등]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선과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경기도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2015.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2014.

국회행정자치위원회,『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문희상의원 대표발의】,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재창의원 대표발의】, 주한미군이전에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김병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5.

권배근,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법정책적 당위성에 관한 검토」, 『법과 정책연구』, 제12권제3호, 2012.

김동성,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GRI 정책이슈, 경기개발연구원, 2011.

김태경,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 GRI 정책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2.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승인현황」, 2015.

백성준·서후석·박용석,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3집 제3호, 2007.

부산광역시, 『부산시민공원백서』, 2014.

장인봉·박한상,「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경기북부의 경제적 손실과 반환기지 개발 지원 대책」, 『정책분석평가학회보』제23권 제2호, 2013.

최용환, 「전시작전권 환수연기에 따른 동두천 지역 대책」, 『정책브리프』, 경기개발연구원, 2014.

한배수,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미군공여지 특별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이대로 좋은가』, 정성호의원·경기도 공여구역자치단체협의회·경기북부상공회의소연합회 주관, 2007.

한인영·오은주,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제28권 제4호, 2014.

행정자치부 재정고(lofin.mogaha.go.kr)

[NARS----------

현장조사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35호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 현황과 과제	2014.12.31	정준화
제34호	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4.12.31	조주은
제33호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	2014.9.19	이현출 조규범
제32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014.6.24	이수진 김보례
제31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제	2014.5.19	원시연
제30호	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2014.5.2	정도영 조주현 서경택
제29호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2.28	손을춘
제28호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 실태와 개선과제 -친족 성폭력을 중심으로-	2013.12.31	조주은
제27호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과제 -출입관리·시설관리·위해환경관리를 중심으로-	2013.12.27	조인식
제26호	로컬푸드 직매장 전개 현황과 활성화 전략	2013.12.13	배민식
제25호	과학관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2013.12.2	권성훈
제24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식현황과 질 제고방안	2013.3.28	장영주

현장조사보고서 제36호

발 간 일	2015년 10월 7일
발 행	임성호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788 · 456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005-9558
발간등록번호 31-9735039-001355-14

Ⓒ 국회입법조사처, 2015

현장조사보고서 제36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NAR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
www.nars.go.kr
ISSN 2005-9558